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5. 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4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5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제16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2년 5월 7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건설국장 오상균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로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에서 개정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현수막 도로점용물의 종류를 2원화(안 별표 제3호)
 - 현수막(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할 것을 포함한다)
 - ⇒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, ‘그 밖의 용도’ 를 추가
-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적용요율 인하(안 별표 제4호)
 -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·출입로 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 ⇒ 토지가격에 0.020을 곱한 금액
 -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·출입로 토지가격에 0.020을 곱한 금액 ⇒ 토지가격에 0.016을 곱한 금액

- 「도로법 시행령」에서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(별표2)을 삭제함.
- 점용료 산정기준 문구 수정(안 별표 비고 제1호, 제4호)
 - 인접한 토지 ⇒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
 - 단위당 점용료 ⇒ 점용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성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나.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
-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하였으나, ‘그 밖의 용도’를 추가하여 현수막 설치대상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(안 별표 제3호).
- 「도로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적용요율 0.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.020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.020 및 0.016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(안 별표 제4호).
- 또한 도로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었던 ‘인접한 토지’를 ‘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’로 규정함에 따라 점용료 부과에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짐(안 별표 비고 제1호).

-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4조 별표5의 기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으로 대체하고,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(별표2)을 삭제함 (안 제10조).
- 그 밖에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2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도로법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의 내용이 일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1 비고란 문구 수정 (안 별표 비고 제1호 제4호)

○ '인접한 토지'	○ 단위당 점용료
------------	-----------



○ '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 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'	○ 점용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나. 현수막 도로점용물의 종류 2원화 (안 별표 제3호)

○ 현수막(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)



○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
○ 그 밖의 용도

다.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적용요율 인하 (안 별표 제4호)

-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·출입로
----- 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
-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·출입로
----- 토지가격에 0.020를 곱한 금액



-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·출입로
----- 토지가격에 0.020를 곱한 금액
-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·출입로
----- 토지가격에 0.016를 곱한 금액

라.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

-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여
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하고 도로법시행령 기준을 준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조표 : 따로붙임

(2) 입법예고(2012. 2. 2 ~ 2.22) :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도로법」”으로, “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를 “시행령”으로, “시행규칙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”를 “시행규칙”으로, “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“도로”라 한다)”를 “영등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”을 “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“재래시장내”를 “전통시장 내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”을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제41조제2항과 영 제42조제2항 사이에 맞을 추가하고 “별표 1”을 “별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도로”를 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“도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41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56조제2항”을 “제71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41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연도이상”을 “연도 이상”으로, “별표 1”을 “별표”로, “해당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부령 제20조”를 “법 시행규칙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 제2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“별표 1”을 “별표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제56조의 2”를 “제73조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별표 2와 같다.”를 “영 제74조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33조제1항제2호”를 “제42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별표1을 별표로 하여 3호란과 4호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1의 비고 제1호 중 “인접한 토지”를 “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 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”로 변경하며, 비고 제4호 중 “단위당 점용료”를 “점용료”로 한다.

별표2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점용료 산정에 대한 점용례) 별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관련)

점용물의 종류	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		점 용	기 간	
1.~2. (생략)					
3. 광고탑·광고판·간판 (돌출간판을 포함한다)·현수막·시설 안내표지·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광고탑·광 고판·간판 (돌출간판을 제외한다)	일시 설치한 것 (1월 미만 점용)	표시 면적 1㎡	1일	400
		기타		1년	122,000
	돌출간판			1년	58,400
	시설안내표지		1개	1년	101,650
	현수막	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그 밖의 용도	표시 면적 1㎡	1일	400
	아 치	도로 횡단 기타		1년	244,000 122,000
4. 주유소·주차장· 여객자동차터미널· 화물터미널·자동차 수리소·승강대·화물 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건 축 물	1층인 건축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		2층인 건축물			토지가격에 0.055를 곱 한 금액
		3층인 건축물			토지가격에 0.06을 곱한 금액
		4층이상인 건축물			토지가격에 0.065를 곱 한 금액
	진·출입로	자동차관련시설(주유소·주 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자동차 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 휴게소 등)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			토지가격에 0.020를 곱 한 금액
		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·출입로			토지가격에 0.016을 곱 한 금액
	기타	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5.~10.(생략)					

※비 고

1.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의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.
2. ~ 3.(생략)
4.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.
5. ~ 8.(생략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“도로”라 한다)의 점용허가, 점용료·변상금,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영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</p> <p>제3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별 제41조제2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p>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,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도로법」 ----- ----- 시행령 ----- ----- 시행규칙 ----- ----- 영등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 -----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-- 전통시장 내 ----- -----</p> <p>제3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 ----- 별표 ----- .</p> <p>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 ----- ----- -----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“도로”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5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「지방세법」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. 다만, 「지방세법」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.</p> <p>제6조(점용료 등의 조정)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44조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점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 ① ----- ----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제71조제3항 ----- ----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 ----- ----- 연도 이상 ----- 별표 ----- ----- ----- ----- 해당 연도 ----- -----</p> <p>제7조(점용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법 시행규칙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 제24조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 <u>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 」 제18조에 따른 시장·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	5. 「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 」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<u>별표 1</u> 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③ ----- --- <u>별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 부정수 및 반환 ①、② (생략)	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 부정수 및 반환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「 <u>국유재산법 시행령</u> 」 제56조의 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3조</u> ----- -----.
제10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구청장이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<u>별표 2</u> 와 같다.	제10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----- ----- --- <u>영 제74조 별표 5</u> 의 기준에 따른다.
제12조(수수료의 징수) ① 법 제 38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<u>제33조제1항제2호</u>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	제12조(수수료의 징수) ① ----- ----- --- <u>제42조제1항제2호</u> ----- -----.
②、③ (생략)	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

별표 1 제3호란

현수막(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)	표시면적 1㎡	1일	400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별표 1 제4호란

진·출입로	자동차관련시설 (주유소·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휴게소 등)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	표시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25 를 곱한 금액
	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·입로			토지가격에 0.020 를 곱한 금액

별표 1 ※ 비고

1. 토지가격은 **인접한 토지**의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**인접한 토지**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.
- 2.~3.(생략)
4. **단위당 점용료**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.
5. ~ 8.(생략)

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(제10조 관련)

개 정 안

별표 제3호란

현수막	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	표시면적 1㎡	1일	400원
	그 밖의 용도			

별표 제4호란

진·출입로	자동차관련시설 (주유소·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휴게소 등)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	표시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20 를 곱한 금액
	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·입로			토지가격에 0.016 를 곱한 금액

별표 ※ 비고

1. ----- **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**-----

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-----
-----.
- 2.~3.(현행과 같음)
4. **점용료**-----
-----.
5. ~ 8.(현행과 같음)

< 삭 제 >